

신원인수인의(계약자) 권리와 의무

- ① 신원인수인(계약자)은 입소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액과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비용은 신원인수인(계약자)이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신원인수인(계약자)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로 통보해야 한다.
- ④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 선정 및 이를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- ⑤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.
- ⑥ 시설에서 진행되는 입소 어르신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원인수인(계약자)은 시설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
- ⑦ 신원인수인(계약자)은 단 · 장기간 외출, 외박을 할 경우에는 시설에서의 입소 어르신 상태를 정확히 인수받고, 시설로 복귀할 경우에는 총담당자에게 어르신 상태를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.
- ⑧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원인수인(계약자)은 병원 진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⑨ 신원인수인(계약자)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 당시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와 상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.





운영규정

항 목	내 용
① 조직/인사/급여/회계/물품 규정	- 조직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조직 및 직제는 법인 및 진각노인요양센터 특성사업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. - 인사: 채용, 승진, 인사이동, 휴직/복직, 징계(One Strike Out) - 급여: 매월 5일 지급, 퇴직금(1년 이상 근무 시 14일 이내 지급) - 회계/물품: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용, 연 1회 정기 재물조사
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	- 정원: 120명 - 대상: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어르신 - 방법: 홈페이지 및 기관 팸플렛 홍보
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(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, '신원인수인의 권리/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 '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	- 계약기간: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의 최대 계약기간 (가족의 계약기간 변경 요청 시, 축소가능) - 계약목적: 입/퇴소에 관한 모든 생활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다. - 입소이용료: 보건복지부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- 기타비용료: 건강검진비용, 수급자 개인 약재비 등 - 계약의 해제요건: 1)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) 건강진단결과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]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 3) 2회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4) 심한행동장애로 인해 타어르신께 피해주어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5) 장기요양등급(시설급여 표기)을 받지 못하였을때
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	- 급여비용변경: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 시설은 이에 준수 적용 - 안내방법: 자체 홈페이지 공지, 가정통신문 개별발송 - 납부방법: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입
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	- 내용: 신체수발, 정서지원, 식사, 이미용, 원예치료, 특별행사서비스, 물리/작업치료서비스, 간호관리 등 - 부담: 비급여 항목(식비 + 간식비)만 본인 부담
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	- 내용: 긴급상황 시 최소한의 신체 제재(격리, 안전벨트 등) 실시 - 비용: 개별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은 본인/가족 부담
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리절차	- 응급: 보호자 연락 → 119/구급대 요청 → 병원 동행 및 인계 - 감염: 협약 의료기관 의사 상담 후 필요한 의료 조치 실시 (공단/관할구청/보건소→감염병 발생 신고)
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	- 반입 금지음식: 떡, 사탕, 딱딱하거나 냄새가 심한 음식 반입 제한 - 소지 불가물품: 칼, 화기, 전자제품 등 위험물품 소지 불가
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/면책범위에 관한 사항	- 책임: 종사자의 고의·중과실 사고 - 면책: 자연사, 천재지변, 본인 과실
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	- 법인 이사회회의 의결 및 승인을 통해 제정 및 개폐
⑪ 운영위원회의 설치/운영에 관한 사항	- 목적: 시설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. - 구성 및 위촉: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5~15인(시군구의 임명/위촉), 위원장 1인 포함->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- 수당: 1인당 7만원/ 회의당일 위원별 개인계좌로 지급